

|       |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|
| 의안번호  | 2216721      |
| 의 퇴 인 | 이건태의원        |
| 회 답 일 | 2026. 4. 17. |
| 추계번호  | 26B0849      |

#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## I. 재정수반요인

| 연번 | 조·항(조제목)                 | 주요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비고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
| 1  | 안 제7조(과학기술기본계획)          |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 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음(제4항 신설) | 재량규정 |
| 2  | 안 제7조의2(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) |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7조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이 변경된 때에는 중장기투자전략을 변경할 수 있음(제3항 신설)  | 재량규정 |

## 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### 1. 근거 규정

| 연번 | 조·항(조제목)                 | 미첨부 근거 규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  | 안 제7조(과학기술기본계획)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</li> </ul> |
| 2  | 안 제7조의2(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)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## 2. 상세 사유

### □ 과학기술기본계획 및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변경 근거 마련(안 제7조제4항, 안 제7조의2제3항)

- 현행법<sup>1)</sup>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과학기술기본계획 및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을 수립하고,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과학기술기본계획 및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음

[표 1] 최근 수립된 과학기술기본계획 및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의 소요 예산 현황

| 연구용역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실시 년도 | 소요 예산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|--------|
|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('23~'27)<br>수립 연구 용역       | 사전기획    | 2021년 | 8.5억원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고도화     | 2022년 | 5.7억원  |
| 합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| 14.2억원 |
|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<br>투자전략('23~'27) 수립 연구용역 | 수립방향 연구 | 2020년 | 0.3억원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사전기획    | 2021년 | 8억원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고도화     | 2022년 | 2억원    |
| 합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| 10.3억원 |

자료: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-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과학기술 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해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기본계획 및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을 변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
  -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, 2003년과 2008년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방향 전환을 반영하기 위해 과학기술기본계획을 변경(재수립)한 바 있음

1) 제7조(과학기술기본계획)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5년마다 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중·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반영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과학기술 관련 계획과 시책 등을 종합하여 과학기술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세우고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. 제7조의2(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)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2조의2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전략적 투자를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 단위의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(이하 “중장기투자전략”이라 한다)을 세우고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.

- 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기본계획 및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의 변경 횟수, 변경에 소요되는 금액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나, 현 시점에서 향후 과학기술 환경의 변화 등의 발생 여부, 변경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여부 및 소요 비용 등을 예측하기 어려우므로, 개정안에 따른 소요비용을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

### 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### Ⅳ. 작성자

□ 성명

|         |     |     |
|---------|-----|-----|
| 국회예산정책처 | 분석관 | 과장  |
| 경제비용추계과 | 최동완 | 예승우 |

□ 대표연락처

|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성명  | 전화번호         | 이메일 주소                |
| 최동완 | 02-6788-3746 | dongwaniii@nabo.go.kr |